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보행 1436	전화번호	전경유성 3조1항 제1부시감전경사함
처리기간	시 감		
시령일자	1981		
보존년한			
보조기관	제1부시감	전경	시범차량 여상차량 법무차량 경찰차량 소방차량 기타
	보건사회부장관		
	보건행정과장		
기안책임자	유유영	78.9.	
경유수신참조	구안참조	공인제부서	총무처
제독	1978년도 제3회 조리사 자취시험 실시		
"제1안"	내부결재		
	1. 조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8년도 제3회 조리사 자취시험을 별첨 계획서와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2. 본 조리사 자취시험 실시에 따른 소요 예산 집행 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첨부	1. 조리사 자취시험 실시 계획서	1부.	정서
	2. 조리사 자취시험 위원회 구성	1부.	
	3. 소요 예산 집행 계획서	1부.	
	4. 용서요강	1부. 끝.	판인
"제2안"			
수신	보건사회부장관		
참조	식품1과장		
제목	동결		


G201-1-8A (갑)
1969.11.10 승인

1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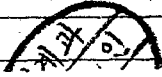
193mm×268mm (면적용지(23)1692/m²)
조 단 정 (1,500,000여 원 배)

<p>당시 시행 1978년도 제3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벌임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을 거 보고 합니다. 첨부 공고문 1부. 끝</p>
<p>"제3안"</p> <p>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동건 당시 시행 1978년도 제3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벌임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 시도 산하에 주저하도록 하여 다수 응시하도록 협조 하여 주시 게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1부. 끝. 수신처 다 7-11 (참조 : 보건국장) 대한요식업중앙회장, 종학요식업연합회장,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장.</p>
<p>"제4안"</p> <p>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위생과장 제목 동건 1. 당시 시행 1978년 제3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벌임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니 위생업소 및 관개기관에 주저하여 다수 응시하도록 계몽할것. 첨부 공고문 1부. 끝. 수신처 서구 1-13</p>
<p>"제5안"</p> <p>수신 남대문경찰서장</p>

참조 경비과장	
제목 인회경감관 차출 업조	
1. 당시 시행 1978년도 제3회 조역사 자취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로저 인회 경감관을 차출로저 하오니 업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78. 10. 21 (일) 78. 10. 21-22 (1978)
나. 장소	보건행정과
다. 차출인원	1명. 끝.
"제6안"	
수신 한국방송공사사장	
참조 방송국장	
제목 동건	
1. 당시 시행 1978년도 제3회 조역사 자취시험을 별첨 공고문 과 같이 실시제되는바 동 시험내용을 바피오 및 박.부외 등역 공지사항으로 방송토록 의피 하오니 업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3부. 끝.	
"제7안"	
수신 수선저참조	
제목 조역사 자취시험을 재위원 추천의피	
1. 당시 시행 1978년도 제3회 조역사 자취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귀고 교수중 다음분야외 전공 교수들 동 시험의 학과시험 위원으로 위촉 로저 하오니 규곡범 2명씩 다음서식에 의거 78. 10. 4. 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차명단	

과목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주소	연락번호	비고
식품	외상	단국					
식품	외상	일반상식					
공중	외상	일반상식					
첨부 공고문 1부. 끝.							
수신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외과대학장, 한양대학총장,			연세대학교 외과대학장 수명여자대학교 총장(참조: 식품영양학과장) 고려대학교 병설의학기술조급대학장			
"제8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심거시험 문제 및 심거시험 책임위원 추천의뢰						
1. 당시 시행 1978년도 제3회 조식사 자격시험을 실시함에 따른 다음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동시험 심거시험 문제를 제1차 책임							
위원으로 위촉코자 추천 의뢰 하오니 구분아범로 다음 다음 서식에 의거							
78. 10. 10. 까지 추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자 명단							
과목	구분	근무처	직위	성명	주소	연락번호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첨부 공고문 1부. 끝.							
수신처	수명여자대학교 총장(참조 : 식품영양학과장)						
한국조식사협회 중앙회장,				대한요식업중앙회장			
서울보건전문학교장,				경희호생전문학교장			

"제9안"	
수신	한양공업고등학교장
제목	조리사 자격시험 과목교실 사용 협조 의뢰
1. 당시 시행 1978년도 제3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 코저 학교 교실을 조리사 학과시험장으로 사용 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기간	78. 10. 22. (일요일)
나. 사용교실수	약 3,000명 (60교실)
"제10안"	
수신	서울보건전문학교장, 명파대학교장
제목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교사 사용 협조 의뢰
1. 당시 시행 1978년도 제3회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실기 시 험장으로 학교 교사를 사용 하고자 하는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기간	78. 11. 9 - 12 (4일간)
"제11안"	
수신	수신저참조
참조	위생과장
제목	동건
1. 당시 시행 1978년도 제3회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급식준 을 차출 저지하니 대상 직원 명단을 다음 서식에 의거 78. 10. 16. 까지 보고 하고,	
2. 대상직원은 시험당일 09:00 정각까지 시간업수 시험장 본부로 인장 및 공무원증을 저참 제출하여 관계관의 저서를 받도록 함것.	
가. 시험일시	78. 10. 22. 10:00

나. 장소 중구 신당동 251소재 한양공업고등학교			
다. 작성대상 구점외생과 4급 갑류이하 정규직 직원			
라. 보고서식			
근무부서	직명	성명	비고
수신처 서구 1-13			
			
"제12안"			
수신 문화공보관			
제목 동건			
1. 당시 시행 1978년도 제3회 조력사 자격시험을 벌임 공고문과 관련하여 실시하오니 보도기관을 통하여 널리 알려 다수 응시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요예산 (공고문 1개사)			
나. 제출방법			
신문공고후 청구액 의하여 회계과에서 정불함			
첨부 공고문 31부·공·			
"제13안"			
수신 문화공보관 ^{정신당} 당관			
제목 1978년도 제3회 조력사 자격시험 답안지 채점 업조외의			
1. 당시 시행 1978년도 제3회 조력사 자격시험(학과)을 공문하여 외계 채점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험일시 78. 10. 22 (일요일)			
나. 채점외곽일시 78. 10. 23			
다. 합격자발표 78. 10. 24 ²⁷			

다. 예정인원 : 약 3,000명

"제14안"

수신 총무과장

제목 조력사 자격시험 원서고부 및 접수 장소 협조 의뢰

가. 당국에서 시행하는 78년도 제3회 조력사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원서원서 고부 및 접수업무를 당시 무문 초소에서 수행토록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고부 및 접수 기간

78. 10. 11. - 78. 10. 16. (5일간) 끝.

고급공서 1978.9.19 제 335호
공공기관장에게서 발부인한
조력사 자격시험

"제15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335호

1978년도 제3회 조력사 자격시험 실시 공고

1978년도 제3회 조력사 자격시험을 조력사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978. 9. 1

서울특별시청, 구자충

1. 원서제부 및 접수기간 (공휴일제외)

78. 10. 11. - 16 (5일간) 근무시간에 한함.

2. 원서접수장소 : 서울특별시청 후문 (수취실)

3. 응제자격

다음과호의 1 해당자로서 그 기관(시설)의 장이 증명하는 자

가. 계속사, 학교, 병원,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 또는 공공 기관 (군부대
포함) 에서 음식물의 조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자

나. 음식점, 유흥음식점 (조리사를 두어야함) 에서 조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그 시설의 장이 증명하는 자
다. 시설감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감소소에서 3월이상 조리 에 관한 감수 이수한 사실이 있다고 그 장 의 장이 증명하는 자
마.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조리에 관하여 학과 90시간 이상 조리 실습 360시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시험과목
가. 학과시험 식품위생법규, 식품위생, 공중위생에 관한 것 식품위생법규; 식품위생, 공중위생에 관한 것 일반상식
나. 실기시험 (시험용역서)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중 택일
5. 시험일시 및 장소
가. 학과시험 : 78. 10. 22. 10:00 - 11:30 (중무 신당동 251 한양공업고등학교)
나. 실기시험 : 78. 11. 11 - 11, 12 (2일간), 19:30부터 장안회관을 학과시험 발표자 발표 중무신당동 1002호 보건전문학교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당시 소정양식) (또는 지방자치관이나 지방의회의) 실기시험과 관련된 보조서
나. 조리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시설감소소에서 3월이상 조리 감수 이수 증명된 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조리학과 90시간 이상 조리실습 360시간 이상 이수 증명 (원서이면 확인요)
다. 사진 3매 (6월이내 촬영한 상반신 3.5" x 4.5")
마. 수수료 30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나. 응시원서를 정정하였을 때는 정정된 원서 는 임체 접수처 와함.
7. 합격자 발표일시 및 장소
가. 학과시험 발표 78. 11. 23. 11:30 시청후정계시과

나. ~~실험실시험관~~ ^{2/} ~~78.11.11~~ ^(1978.11.11) ~~11.11.11~~ ^(11.11.11) ~~(2월)~~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답안지의 답 기재한 답판에 수정 가필 또는 중요한 답은 백담판 만 부호입.

나. 유의사항 및 기마사항은 응시요강을 참조함.

다. 78년도 제2회 학과시험 합격자는 78년도 제3회 학과 시험이 대체되므로 접수처에서 확인을 받아 원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자는 시험 당일 09:30 까지 지정된 좌석이 책상 위에
개인키의 함입을 받아야 함



1075

78년도 제2회 조력사 자격시험 실시 계획서

조력사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 시행 78년도 제2회 조력사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 자함.

1. 시험일정

- 가. 시험실시공고 78. 9. 25.
- 나. 응시원서접수 78. 10. 11 - 16 (5일간)
- 다. 학과시험일시 78. 10. 22. 10:00 - 11:30
- 바. 학과시험 합격자발표 78. ~~10. 27~~ 11. 2
- 빠. 실기시험일시 78. 11. 11 - 11. 12 (2일간)
- բ. 최종 합격자발표 78. 11. 26. /

2. 시험장소

- 가. 학과시험장소 한양대학교등학교 (총구 신당 2기)
- 다. 실기시험장소 인천중학교. 방학제학당중 5학년

시험과목

- 가. 학과시험
 - 1) 식품위생법규
 - 2) 식품위생에 관한 일반상식
 - 3) 공중위생에 관한 일반상식

나. 실기시험

- 1) 관찰
 - 2) 양식
 - 3) 입식
 - 4) 증식
- } 4분 야중 선택 1분 야

4. 용시자구

- 가. 계속사, 학교, 병원과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 또는 공공기관 (군 부대 조리학 포함) 에서 음식물의 조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자
- 나. 조리사를 두어야 할 음식점 또는 유흥음식점에서 조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시설의 장이 증명하는 자
- 다. 사업장급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급식소에서 3월이상 조리업에 관한 경력을 이수한 사실이 있다고 그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자
- 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 조리에 관하여 학과 90시간 이상 조리실습 360시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 하였다고 그 학교장이 증명하는 자

5. 용시절차

- 가. 용시원서접수기간
- 나. 용시원서 접수장소
- 다. 제출서류

모든 국공립 기관에서, 비영리 법인이 설치된 영리종교법인은 제외
 78, 10, 11-16 (5일간)
 격담 방문시요.

- 1) 용시원서 (소정양식) 1부.
- 2) 조리업무 종사 증명 (용시원서 이면) 1부.
- 3) 사진 (3.5 (cm) x 4.5 (cm)) 및 상반신 반명함판 3매
- 4) 수수료 (서울특별시 수입공과) 2,000원
- 5) 용시원서 기재사항을 증명 하였을시는 ~~영광증명~~ 있는 원서는 입계 접수시 ~~없음~~

라. 제출도구

- 1) 학과시험 : 볼펜또는 만년필 (잉크 또는 흑색)
- 2) 실기시험 : 식도, 위생복, 위생모, 영주

마. 수험표 교부 및 대조

수험표는 원서 접수시에 교부하고 시험 당일 ~~20:00~~ 부터 시험장에서 원서에 첨부된 사진과 수험표에 첨부된 사진을 대조 확인하고 상회시에는 퇴장 조치하여야 하며 수험표는 책상 좌측 상단에 놓게하여 수시 시험 관시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시험기록 한다.

바. 시험시간

- 1) 양과시험은 시험과목 3과목을 과목당 20문제 하고 (총 3과목 60문제) 전체 시험시간은 90분으로 한다.
- 2) 실기시험은 본야별 번호순으로 실시하되 09:30 부터 실시한다.

가. 합격자 발표

1) 합격시험 (양과) ~~발표~~

78. 11. 27

2) ~~합격자 발표~~

~~78. 11. 11 - 12 (9일전)~~

• 시험 후 과 개시관에 고령단 (용시번호도 가함) 을 게시 발표한다.

나. 합격증 교부

각종 합격자에 대하여 78. 11. 27 - 31 까지 조력사 자격시험 합격증을 교부 하고 합격증 교부 절차를 안대한다.

6. 공고방법

가. 합격신문 (11월 11일) 1개사에 1회 공고한다.

나. 공고안 : 별첨

7. 사업예정액

공고후 출석자 및 합격자출수에 따라 산출한다.

$$(출석자수 \times 2,000\text{원}) + (\text{합격자수} \times 1,000\text{원}) = \text{사업액}$$

8. 예산과목 및 소요예산 (별첨)

보건비, 보건항상, 보건예방관리, ~~조력사자격시험~~

9. 기마사항

가. 시험 문제 답안지 작성에 있어 수정가필 또는 정정한 답은 해당답란 부호로 처리한다.

나. 78년도 제2회 조리학 학과시험 합격자는 78년도 제3회 식영 학과 시험이 면제되므로 접수처리에 확인을 받아 원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다. 접수된 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합격후 급구조사가 발생할시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조리사 자격 시험 위원회 구성 (안)

1. 명칭

서울특별시 조리사 자격시험 위원회라 한다.

2. 임원

- 가. 위원장 1인
- 나. 부위원장 1인
- 다. 감사 1인
- 라. 학과시험인원 (과목별) 2인
- 바. 실기시험위원 (분야별) 2인
- 사. 서기 1인
- 시. 감독관 (수험교실별) 2인이상

3. 구성

- 가. 위원장은 보건사과과장으로 한다.
- 나. 부위원장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 다. 감사는 위생계장으로 한다.
- 라. 학과시험 위원 및 실기시험 위원은 다음 각항 해당자 중에서 선정 위촉한다.
 - 가. 대학교수 또는 요리계 권위자
 - 나. 조리작업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다
- 마. 서기는 위생계 직원으로 한다.
- 바. 감독관은 구구 위생과 직원으로 한다.

4. 직무

- 가. 위원장은 시험개념중 시험위원과 감독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학과별 실기시험과 문제풀이 담당의 선정과 지휘의 책임을 진다.

- 다. 관사는 시험실시에 따른 제반준비및시험장을 감독하며 시험감독관및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및함독을 한다.
- 라. 학과시험 위원은 담당과목의 출제및 채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채점을 볼부 마로 처리시 책임책임을 면한다)
- 마. 심거시험 위원은 담당분야의 출제및 채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바. 서거는 시험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사. 시험감독관은 시험장의 질서유지와 시험 동안의 세부 및 수전과 부정행위처의 조바및 회장의 책임을 진다.

5. 시험위원외부

학과및 심거시험 위원은 범거시험에 의거 위촉하며 기타 관 직원은 위촉을 생략한다.

6. 시험출제방법

- 가. 위촉받은 학과시험 위원은 담당과목에 대한 시험문제 30문제를 출제하며 본 과목 1문30초 이내의 백당합수 있는 정도와 본 과목을 출제한다 (학부제인일음)
단 30문제를 20문제는 선택형 (4차선택형) 10문제는 진외형 (0x) 으로 출제한다.
- 나. 위촉받은 심거시험 위원은 담당분야에대한 시험 문제당 30문 이내의 보기 들 완성할수 있을것으로서 심부에 3년이상 종사한자가 출시물을 조미할수 있는 범위도 한다. 단 위촉위원 1인당 5문제를 출제한다.

7. 채점방법

- 가. 필기시험은 과목당 20문제에 배점은 각 5점으로 하되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는 답안은 득점으로 계산하며 불민답의 답점은 없이 당시 볼부마에 의거 채점한다.
단, 답안의 격오를 가필하거나 정정합시에는 당해답안은 채점하지 아니한다.
- 나. 심거시험은 위상기술 및 배선으로 구분하여 채점하며 구분야를 100점으로 총 배점 3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채점위원2인으로 600점만점으로 한다.

8. 시험 합격 기준

가. 학과시험

- 1) 3과목 (식품위생법규, 식품위생에관한 일반상식, 공중위생에관한 일반상식) 총점 3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과목당 40점이상 총득점 180점 이상을 득하면, 합격으로 하고 18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총득점이 180점 이상일지라도 과목별로 40점 미만인 과목이 1과목 이하로 있을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한다.

나. 실기시험

- 1) 실기시험 위원 2인 1조의 채점 (1인당 300점 채점) 총 600점을 만점으로 구분 야당 60점이상으로 하여 총득점 360점 이상을 득하여야 합격으로 하고 총득점 360점 이상일지라도 분야당 (위생기술)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9. 조약사 자격시험 위원회 구성 및 임명

본 위원회의 업무 관의 집행에 따른 심원은 개조국인 7명의 위원장 직권을 시용하도록
규정한다.

78년도 제3회 조리사 자격시험 용서요강

1.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78. 10. 11 - 78. 10. 16 (5일간) 근무시간에 한함.

2. 원서접수 장소

주. 접수처 서울특별시청 후문 (수취실)
 나. 문의처 " 보건행정과 (72-9447)

3. 용서자격

가. 조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는 다음 과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경력 (직업)의 장이 증명하는 자라야 한다.

- 1) 계속사, 학교, 병원과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 또는 공공기관 (군 부대 조리부대)에서 분식물의 조리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임이 있을 경우 ~~그 기간~~ ^{이 중의 하나}
- 2) 조리사를 두어야 할 음식점 또는 유통음식점에서 조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기간~~ ^{그 기간의 장이 증명 하는 것}
- 3) 식품검출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검출소에서 3월이상 조리업 관련 업무를 이수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기간~~ ^{그 기간의 장이 증명 하는 것}
- 4) 교육법령 규정외에 학과에서 식품조리에관하여 학과 90시간 이상 조리실습 360시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시험과목

가. 학과시험

- 1) 식품위생법규
- 2) 식품위생에 관한 일반상식
- 3) 공중위생에관한 " "

나. 실기시험 (객관식시험 정답지에 관한 것)

한식, 양식, 일식, 중식중 택일

*또는 국영림 기관이나 비영리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식당 보조사선*

5. 시험일시 및 장소

가. 한국시험

- 일시 78.10.22. 10:00 - 11:30
- 장소 중구 신당동 251 한양공업고등학교

나. 심격시험

- 일시 78.11.11 - 11.12 (2일간) 09:30 부터
- 장소 **한국시험 발표자 발표**
(총무부가 15번지, 보간 건물학교)

6. 시험방법

- 가. 한국시험은 약나고 보기 15문제 (선택형)와 거부평가 5문제(0,x)로 병행하고
단답형 수평, 가필하거나 정정면답은 해당답만은 무효로 한다.
- 나. 심격시험은 한국시험 합격자에 한한다.

7. 제출서류

가. 용서원서 (총 (소정양식))

- 나. 조력업무에 종사할필 사십공중소에서 3월이상 조력에 관한 공습이주자및 교육법
제국령에 의한 학교 또는 공공필기관에서 바영법인여 습자 종업하는 직업보도지
선에서 심봉조력에 관한 것과 90시간 이상 조력실습 360시간 이상 공중을 이수한
사십종명 (원서 이면)

다. 사진 3매 (6원 이내 촬영한 판도 상판신 반명판판 3.5 x 4.5)

라. 수수료 2,000원 (서울특별시 수입종지)

마. 용서원서 기재사항을 정정하였을시는 일체 접수치 않음.

8. 합격자발표

- 가. 한국시험 합격자발표 78.11.2. 시청우경 개시관
- 나. 심격시험(착용)합격자발표 78.11.29. "

9. 응시자 주의사항

- 가.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09:00 까지 출두 09:30 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감시관지휘인을 받아 시험중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 나. 시험장 심시후의 시험장 입장은 일체 불허한다.

다. 지침도구

- 1) 학과시험 : 불펜 또는 만년필 (흑, 청색)
- 2) 실기시험 : 식도, 위생복, 위생모, 행주

70. 계약사항

가. 78년도 제1회 시험 당시 조립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78년도 제3회 시험 학과 시험에 먼저 필기시험 점수 처리에 확인을 받아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합격후 합격사유가 발생할시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1978년도 제2회 조리학 자격시험 소요 예산 집행계획서

예산과목 : 보건직, 보건향상, 보건예방관리

1. 예산내역서

32,534,000
32,534,000

가. 기각수당

845,000

- 화과시험 출제수당 $10,000원 \times 3과목 \times 2명 = 60,000$ ✓
- 심개시험 $5,000원 \times 4과목 \times 2명 = 40,000$ ✓
- 과제수당 (화과시험) $3,000원 \times 140명 = 420,000$
- 과제수당 (심개시험) $3,000원 \times 30명 \times 2일 = 180,000$ ✓
- 편집및 편찬수당 $1,500원 \times 10명 \times 3일 = 45,000$ ✓
- 채점수당 (심개시험) $50원 \times 2,000명 = 100,000$ ✓

나. 임원수용비

350,000

- 답안지 인쇄 $20원 \times 3,000매 = 60,000$
- 문제집 인쇄 $30원 \times 3,000매 = 90,000$
- 응시원서 인쇄 $10원 \times 5,000매 = 50,000$
- 응시요강인쇄 $10원 \times 5,000매 = 50,000$
- 광고용 인쇄 $10원 \times 2,000매 = 20,000$
- 계몽지대 $30,000원 \times 1회 = 30,000$
- 계몽출대 $50,000원 \times 1회 = 50,000$

270,000원은
발간실 의뢰

다. 운송비

19,200

- 시험기구 및 시험 자료운반비 $9,600원 \times 2대 = 19,200$

라. 수수료수신비

211,200 (거액정 관외 사용)

- 신문공로료 $1,200원 \times 4판 \times 40행 = 211,200$

- 마. 재료비 거마 2,000,000
 ○ 식염자료 거마 $1,000\text{원} \times 2,000\text{명} = 2,000,000$
- 바. 임차료 328,000
 ○ 출제및 편집실 $3,000\text{원} \times 2\text{실} \times 3\text{일} = 18,000$
 ○ 학과시험장 $3,000\text{원} \times 60\text{실} = 180,000$
 ○ 실험시험장 $3,000\text{원} \times 15\text{실} \times 2\text{일} = 90,000$
 ○ 실험시험기구 $1,000\text{원} \times 40\text{종} \times 1\text{회} = 40,000$

2. 집행방법

가. 지방행정사무관 유유임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 전도자금 출납장부 등으로 영수 예산집행하고 사후 정산토록 함.

나. 전도자금을 받고자 하는 내역

거마수당	845,000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11호)
일반수용비중	80,000원	(" " 5호)
운송비	19,200원	(" " 제53조 2호) (준용)
재료비거마	2,000,000원	(" " 제48조 5호)
임차료	328,000원	(" " 제53조 1호) (준용)

다. 일반수용비중 각종 인쇄비 270,000원에 대하여는 구내 종합 방과심야
 인쇄 의뢰토록 하고 수수료 수선비 211,200원은 문화공보부실에 공고 의
 뢰하여 공고후 청구에 의하여 회계과에서 지불 하도록 한다.